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정도 의원 외 2인

2. 찬 성 자 : 강승수 의원 외 10인

### 3. 제안이유

- 기존 경로당의 노후화, 공간협소 등으로 이용의 불편이 발생되지만 경로당의 신축, 증개축을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이 산재하므로 공동주택 매입을 통해 경로당을 이전 혹은 신축할 수 있도록 함.
- 고령화 시대에 맞춰 신축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경로당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신축의 정의 재설정에 관한 사항(안 2조제2호)
- 매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4항)

##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47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부서검토: 어르신복지과 의견제출
- 예산조치: 어르신복지과 비용추계서 제출
-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 6.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은

-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노후·협소 경로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매입해 경로당을 이전·신축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 여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안으로,

### ○ 검토 결과,

- ‘신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매입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 앞으로 고령화에 대응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매입 대상 공동주택이 노후화된 건축물인 만큼 안전성 확보와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며, 리모델링 추진시 시설을 이용할 어르신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간 구성과 편의시설을 설계함으로써 실제 이용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집행부서에서는 다른 주소지 경로당 명단에 잘못 포함되거나 중복으로 여러 경로당에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경로당 명단을 철저히 관리하여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